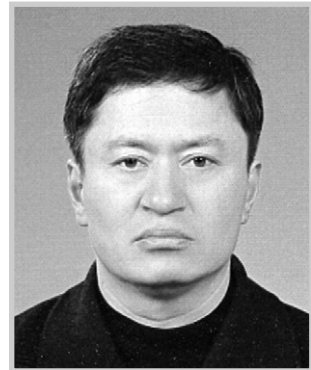


## 보조사료 생균제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관리를...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 이 인 호

EU를 비롯한 선진축산국가에서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에 대한 전면 사용금지나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그 대체물질의 하나로 추천되고 있는 것이 생균제(Probiotics)이며 이미 통용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5월 1일부터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의 수가 53종에서 25종으로 대폭 감축되면서 생균제를 비롯한 대체물질(Alternatives)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균제는 동물용 의약품과 보조사료 생균제로 나누어서 관리되고 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NVRQS)에서 동

물용의약품으로 관리되던 생균제가 동물약품협회에서 관리하는 의약부외품으로 이관을 확정하려는 마지막 단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기적인 약사감시를 받아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생균제에 비해 허가절차가 매우 간편해 압도적으로 비중이 큰 보조사료 생균제의 경우에는 1999년의 업무이관 이후에 생균제는 보조 사료로 취급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인사나 단체들의 주장과는 달리 법의 미비점을 100% 활용한 편법등록의 만연과 관리부실을 비롯한 문제점이 대폭 노출되어 이제는 전면적인 허가과 관리에 대한 대수술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

야 할 것으로 요망되고 있다.

법은 농림부가 제정하고 허가는 도, 시, 군에서 하고, 수입추천과 검사는 단미사료협회에서 하는 현행의 법체계에서는 관련협회의 전산화(예: 동물약품협회의 VPDP프로그램) 미비로 인해 생균제 판매회사의 편법등록사항을 수입추천과 검사를 하는 관련협회에서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조 사료 생균제의 경우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성장촉진용 항생물질의 사용을 수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하는 대신에, 생균제의 인증마크를 받아 25개 회원국가에서 자유롭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거의 항생물질의 허가에 준한다고 할 정도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회사만이 인증마크를 획득한 EU의 상황에 비하면 허가과정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5년 이전에 외국의 수입개방 압력에 대비해서 자국의 혼란한 생균제 시장을 먼저 정비하면서, 업체의 반발 속에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생균제에 대한 재평가 과정을 완료한 뒤에 외국

의 생균제 회사에 일본의 기준을 충족 시에는 언제든지 생균제의 사료첨가를 개방한다고 공개 선언한 일본의 사료안전 법을 생균제 재평가 과정을 전혀 하지도 않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법을 그대로 번역하여 국내 사료관리법으로 시행하니 어찌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점투성이인 생균제 관련법의 미비점을 이법의 제정자들과 시행자들도 모를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료관

리법 개정시마다 애써서 외면하고, 근본적이 아니라 일부 용어의 가지치기 정도의 수정을 하면서 자신들의 과오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과학적인 반론증거를 본인을 비롯한 업계의 다수 관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밀실에서 버티기를 하여 스스로 궁지에 몰리는 처지를 자초하고

있다.

보조사료 중에서도 생균제는 살아있는 균이 첨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 FDA CVM에서도 GRAS균 목록을 지정하여 AAFCO와 함께 관리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학자들의 최근 연구동향도 이전에는 주로 생산성향상에 초점이 집중되었으나, 최근에 일본에서는 우시다(牛田) 교수를 비롯한 학자들이 가축과 사람에서의 안



전성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허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생균제 관련 국제적인 동향과는 거리가 멀게 우리나라는 특히 환경개선용 관납 생균제의 경우에는 편법등록 된 생균제가 판을 치는 법의 권위 추락의 극치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정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발언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않으니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물약품협회와 단미사료협회의 도, 시, 군의 정보공개청구(2006년)에 의해서 밝혀진 생균제의 편법등록실태는 하늘을 찌를 듯한 실정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료 해당업체들은 농림부에서 이를 시정하여 법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하려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현행의 법과 자가 품질관리 검사체계에서 자신들의 행위는 어쩔 수 없는데 왜 3회에 걸쳐 인터넷과 기술 자료를 통해 양축농가와 업계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과거를 파헤치며 분란을 일으키려하냐며 원망을 하는 적반하장의 자세를 견지하려 들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인사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전술한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최근 들어 수의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과학적 증거주의(Evidence-based Medicines, EBM)에 입각해서 반론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또한, 현행의 생균제 관련 법 및 환경개선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과연 얼마나 중간업자들이 아니라 양축농가에게 이익을 환원시켜 주고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해서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들에게 진정한 검증을 받으시라는 것이다.

허가업체를 도, 시, 군에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보조사료 생균제의 문제점은 이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면위로 표면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1년에 2번하는 유명무실한 자가 품질관리검사 때문에 편법등록이 판을 치는 상황이 차단이나 근절될 수 있도록 생균제의 법 관련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집단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도·시·군과 농림부 중에서 누가 보조사료 생균제를 관리하는 것이 업체를 위해서나 양축농가를 위해서나 바람직한지에 논의가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이제는 보조사료 생균제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입장에 놓인 업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분이 아니라 생균제의 생균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생물질 허가에 버금가는 실증자료를 요구하는 EU와 필요하다면 MRL까지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허가과정부터 편법등록을 비롯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제화 할 수 있는 규정을 전문가집단에서 제정해서 공개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집단이기주의적인 항생물질의 감축과정에서 싸이로마진의 삭제로 양계농가들이 파리발생문제로 불편함을 겪은 경우에서 보듯이, 보조사료 생균제 관련 문제점의 논의 과정에서도 또다시 양축농가의 의사가 무시된 채, 해당업체와 관련 협회의 의사만 관철되는 식의 법이 재탄생되어 효능이 미확인된 제품이 계속해서 양산되는 상황이 재연되게 한다면 이는 양계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에서 결코 좌시해서 불이익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자 한다. **양계**